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16
----------	-------

발의연월일 : 2018. 3. 9.

발의자 : 설훈 · 김민기 · 김한정
김병관 · 김태년 · 백혜련
안민석 · 조정식 · 권칠승
정재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감척시행계획, 어업선진화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규정과 국회 제출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감척시행계획, 어업선진화시행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7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세워야”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세워야”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 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u>세워야</u>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 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 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 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 ----- ----- ---<u>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u> <u>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u>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p>
---	--